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964
----------	-------

발의연월일 : 2025. 8. 4.

발 의 자 : 김동아 · 조계원 · 허성무
이상식 · 이광희 · 이병진
임호선 · 손명수 · 이강일
박균택 · 김기표 · 양부남
김용태 · 홍기원 · 이수진
배준영 · 정춘생 의원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임무유공자를 특수임무부상자와 특수임무공로자 등으로 구분하여 차등적인 예우를 제공하고 있음. 그 중 특수임무부상자는 특수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어 상이등급을 받은 사람으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의료지원과 수송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특수임무공로자는 부상을 입지 않은 특수임무유공자로서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혜택만을 받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현행법의 체계에 따르면, 특수임무 수행 과정에서 우연히 부상을 입었는지 여부에 따라 예우 수준이 크게 달라지게 되는 바, 동일한 특수임무를 수행하였더라도 부상 여부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이루

어지고 있음.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수임무부상자와 특수임무공로자 간의 불합리한 차등을 해소하기 위해, 특수임무부상자에게만 제공되었던 진료 및 수송지원을 대상을 특수임무유공자 전체로 확대하여 공평한 예우를 보장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합당한 보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33조제1항 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본문 중 “특수임무부상자가 그 부상 부위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걸린 경우에는”을 “특수임무부상자와 특수임무공로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특수임무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이 그 부상 외의 질병에 걸려”를 “특수임무공로자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73조제1항 중 “특수임무유공자 중 특수임무부상자와”를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및”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진료) ① <u>특수임무부상자가 그 부상 부위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걸린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한다. 다만,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제33조(진료) ① <u>특수임무부상자와 특수임무공로자는</u> ----- ----- ----- ----- ----- ----- -----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u>특수임무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이 그 부상 외의 질병에 걸려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u>	④ <u>특수임무공로자가</u> ----- ----- ----- ----- ----- ----- -----.

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② (생략)	----- -----. ② (현행과 같음)
---	--